

《2024. 2월 2차》
청렴메아리

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 : 음식물편 **청렴수원**

관련 근거

○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 임대 업무를 담당하던 OO공사 직원A는 직무관련자(임차인)B와 식사를 한 후, B가 식대 7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자, “각자 본인 음식값을 내자”라고 반환의사를 지체없이 나타냈으나 해당 결제를 즉시 취소하지 않았고 5일 후에 모바일 뱅크를 통해 식사비용을 반환하였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 □□시의회 사무과장C는 해당 지역 조합장D 등 총 22명과 633,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였고 대금은 조합장D가 지불하였다. 사무과장C는 대금을 식사인원수로 나누면 28,772원으로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3만원 이하이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C와D 등 16명이 같은 방에서 식사를 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각각의 방에서 주문한 음식의 양과 종류가 달라 음식대금을 균등하게 22명으로 나누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설령 C와D의 방에서 주문한 음식대금이 1인당 3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

**부조리
신고**

♣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클릭)
♣ 감사관 핫라인(☎031-221-3650), 부패청탁금지법 위반신고(국번없이 1398)